

금융생활에 필요한 모든 정보, 인터넷에서 「파인」 두 글자를 쳐보세요

“금융은 튼튼하게, 소비자는 행복하게”

	보 도 자 료			
	보도	2022. 3. 11.(금) 조간	배포	2022. 3. 10.(목)
책임자	자산운용검사국 검사3팀 박재영 팀장 (3145-7621)	담당자	김지은 검사역 (3145-7696)	
	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박성식 팀장 (3774-9670)		홍세희 검사역 (3145-7638)	
	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운영부 이윤희 부장 (2003-9390)		유혜진 대리 (3774-9672)	
			성원화 주임 (2003-9393)	

제목 : 2021년 주식리딩방 불법·불건전 영업행위 점검결과

☞ 점검결과 108개 업체, 120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하였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점검 강화를 통해 투자자 피해예방 및 건전 거래질서를 확립하겠습니다.

I. 점검배경

- '21년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민원*은 총 3,442건으로 지난해(1,744건) 대비 97.4% 증가하였으며,
 - * 금융감독원 민원(건) : ('18) 905 → ('19) 1,138 → ('20) 1,744 → ('21) 3,442
 - '21.5월 투자자 보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·감독 강화방안을 수립하여 제도개편 진행 중임
- 제도개편 진행 중 발생 가능한 공백 해소를 위해 한국거래소·금융투자협회와 공동으로 일제·암행점검을 실시하는 한편,
 - 최근 유튜브 등 온라인 방송플랫폼이 크게 활성화됨에 따라 주식 방송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도 실시하였음

Ⅱ. 점검개요 및 결과

1 점검개요

- (점검대상 선정) 민원 빈발업체, 매출액 상위 업체 등 정량적·정성적 요소 감안 총 660개 업체 선정(방송플랫폼 업체 20개 포함)
 - 방송플랫폼 이용중인 20개 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은 조회·구독자수 등을 고려하여 선정
- (점검항목) 미등록 투자일임·자문업 등 투자자의 금전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
 - 이외에 유사수신, 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 영위, 보고의무 위반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점검

2 점검결과

- (개요) 108개 업체에서 총 120건 위법행위를 적발하였으며, 적발률은 16.4%로 전년 대비 2.4%p 상승
 - 암행·일제점검 적발률(각각 57.5%, 12.2%)은 지난해와 유사하며
 -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방송매체 점검에서 12건의 위법행위가 적발(적발률 60.0%)

< '19~'21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·불건전행위 적발률 >

구분	'19년			'20년			'21년		
	점검업체	적발업체	적발률	점검업체	적발업체	적발률	점검업체	적발업체	적발률
암 행	14	5	35.7%	10	6	60.0%	40	23	57.5%
일 제	300	40	13.3%	341	43	12.6%	600	73	12.2%
방송매체	-	-	-	-	-	-	20	12	60.0%
합 계	314	45	14.3%	351	49	14.0%	660	108	16.4%

□ **(주요 위반사항)** 보고의무 위반(39.2%), 미등록 투자자문(31.7%), 미등록 투자일임(23.5%), 무인가 투자중개(3.3%)등 順

○(보고의무 위반) 총 47건 적발되어 전체 위반건수중 39.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지난해 대비 23건(95.8%) 증가

○(미등록 투자자문업) 총 3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1.7%를 차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대비 20건(111%) 증가

※ (위법행위 사례) 최근 텔레그램이나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자체 개발한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는 행위 다수 적발

○(미등록 투자일임업) 총 28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23.5%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24건 증가하여 가장 높은 증가세 보임(600%)

※ (위법행위 사례) 유사투자자문업체가 증권사 OpenAPI를 기반으로 알고리즘 매매 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·대여하는 행위 적발

○(무인가 투자중개) 총 4건 적발로 전체 위반건수중 3.3%를 차지하며 지난해 대비 1건(33.3%) 증가

※ (위법행위 사례) 유사투자자문업체가 비상장주식 매매를 중개하는 플랫폼을 제공한 행위 적발

< '20~'21년중 유사투자자문업자 불법·불건전행위 적발 현황>

(단위 : 건, %)

구분	'20년		'21년	
	적발	비중	적발	비중
미신고 유사투자자문업	-	-	3	2.5
미등록 투자자문업	18	33.3	38	31.7
미등록 투자일임업	4	7.4	28	23.5
무인가 투자중개업	3	5.6	4	3.3
보고의무 미이행	24	44.4	47	39.2
기타	5	9.3	-	-
합계	54	100	120	100

Ⅲ. 주요 피해사례

1

신용카드 무단결제

□ 서비스 이용후 후불결제 및 특정 수익률 미달성시 환불 등으로 투자자를 현혹하고

○ 신용카드 정보를 취득한 후 동의 없이 무단으로 요금 결제

사례 1

안녕하세요. 선생님 XX투자그룹 000팀장입니다. 저희는 미공개 정보로 '세력'을 형성하여 초보 투자자분들께 수익을 안겨드리는 XX투자그룹 입니다. 선생님께만 특별히 드리는 기회입니다.

투자자: 오 그래요? 어떤 정보인데요?

불법리딩업체: 저희 정보가 공짜는 아니고, 이번에 매집하는 종목이 있는데, 이 종목 정보 받으시려면 저희 XX투자그룹에 가입하시면 됩니다. 회비는 월 100만원에 1년 계약해서 총 1,200만원이구요

투자자: 그런데 제가 지금 1,200만원은 없는데요?

불법리딩업체: 그게 아니고, 선생님께서 수익이 나지 않으면 저희는 돈을 받지 않습니다. 저희가 먼저 종목 안내 해드리고 고객님의 수익이 나면 후불로 결제하는 방식입니다. 후불 결제를 위해 카드번호 및 비밀번호 앞 두 자리를 알려주세요

투자자: ABC카드, 1234-5678-0000-0000, 비밀번호 앞 두 자리는 00입니다.

불법리딩업체: 네 고객님의 감사합니다. 저희가 계약서 사본 문자로 보내드리겠습니다.

30분 후, 투자자 명의 카드에서 1,500만원 일시불 결제

투자자: 아니, 왜 계약내용과 다르게 갑자기 일시불로 1,500만원이 결제된거죠? 계약해지 해주시고 환불해주세요!

불법리딩업체: (위조한 계약서 보여주며) 무슨 말씀이시죠? 선생님께서 저희 VIP서비스 1,500만원에 계약하셨잖아요?

2

미등록 금융투자업

□ 투자자에게 일대일로 투자자문을 하거나 자동매매 프로그램을 판매·대여하는 경우

○ 투자손실 및 과당매매에 따른 고액의 수수료 발생 등 투자자 피해 발생 가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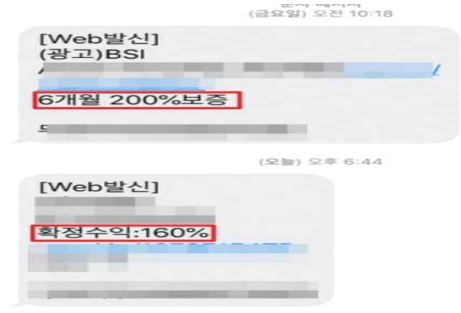
사례 2



3 허위 · 과장광고 등

-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에도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사실을 제도권 금융회사로 오인하도록 하거나
 - ‘XXX% 수익률 보장’, ‘수익률 미달시 전액 환불’, ‘손실보전’ 등의 문구로 허위 광고

사례 3



VI. 향후 계획

- (수사기관 통보) 위반행위 적발 업체 65사(73건)를 통보
 - (투자자 피해예방) 소비자 경보 발령 등 투자자 피해 예방활동 지속
 - (유관기관 공조 강화) 거래소, 협회와 유관기관 합동점검체계를 지속 운영하고 공조방안 모색
 - (제도 개선 검토) 투자자 피해 방지를 위해 유사투자자문업 시장의 진입 및 영업행위 규제 강화 등 감독제도 개선 추진
- ※ <붙임> 투자자 유의사항 참고

붙임 투자자 유의사항

1 유사투자자문업 제도 개요

- 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자와 엄연히 다른 업을 영위하는 업체로서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님
 -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불특정 다수에게만 금융투자상품의 투자판단 및 가치에 대한 조언이 가능하며
 - 일대일(1:1) 투자자문 및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·대여는 불법
- 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기초적인 신고요건(교육이수 등)만 충족하면 누구나 신고만으로 영업 가능하며
 - 제도권 금융회사와 달리 영업행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아 전문성, 거래안정성, 건전성 등이 검증되지 않음

2 피해유형별 및 소관기관 안내

- ☐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제도권 금융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대상이 아님
 -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서비스 해지·환불 관련 피해구제는 한국소비자원이 전담
 - 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 등 자본시장법 위반 사항은 금융감독원 및 경찰 등 수사기관 문의 요망

<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피해사항별 소관기관 >

피해사항	관련법령	소관기관
계약해지·환불, 과도한 위약금	방문판매법, 전자상거래법 등	한국소비자원
무인가·미등록 금융투자업 영위, 사기 등 (일대일 투자자문, 자동매매 프로그램 판매·대여 등)	자본시장법, 형법	금융감독원·경찰 등 수사기관